

시급한 전자문서의 개념통일과 법적효력인정

컴퓨터의 발명은 인간의 사회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보화사회 또는 정보사회란 말로 표현되고 있다. 정보사회가 내포하는 의미는 수 없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인류 문명의 계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해온 기록방식 또는 문서화 방식의 혁신을 빼놓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문서활동은 종이 위에 문자를 사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이러한 기록은 문서로 남아 차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였다.

신 동진 영남대 무역학과 교수

정보사회에서는 인간의 기록유지 또는 문서화 양상이 컴퓨터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종이 문서와는 달리 인간이 직접 눈으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흔적없이 변조가 가능한 컴퓨터 조직내의 파일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지니게 되었다. 이 같은 문서활동의 변화는 종래의 종이 문서에 바탕을 둔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어서 정보사회에서의 문서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문서도 기존 법체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문서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그러한 신개념의 문서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정보사회에서 문서활동의 원활화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전송·보관된 신개념의 문서는 사용목적에 따라, 연구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서 개념상의 통일이 안된 혼란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또한 이 같은 신개념의 문서는 ‘전자문서’(Electronic Document)라는 용어상의 통일성은 보이고 있으나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논의는 그 개념상의 통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자문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질적인 측면에서 개념정립을 시도한 후 현행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개념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전자적 기록물의 특성

‘전자적 기록물’이라 함은 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기록 방식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처리를 통해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정보 기록 매체에는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자기 드럼 및 광디스크 등을 대표적인 기록 매체로 볼 수 있는데 이들 매체에는 일정한 사상이나 관념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

전자적 기록물은 일정한 사상이나 관념을 특정한 방식으로 기록한 물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문서 개념을 지니고 있으나 종래의 문서와는 그 특성상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전통적인 문서는 가시성, 가독성 및 영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전자적 기록물은 컴퓨터 등의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기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인식할 수도 없다. 또한, 그러한 매체에 기록된 내용은 언제든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수정, 변조, 삭제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자적 기록물은 전통적인 문서가 가지는 특성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그것을 문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특히 보수적인 형법학자들 사이에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전통적 문서(특히 종이 상에 수기로 작성된 문

서)는 작성자의 필체, 종이의 질, 작성 양식등이 각각 특성을 지니고 있고 작성자의 식별, 명의인의 인증 방법이 간단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 기록물은 누가 작성하여도 거의 동일하며(특히 표준 양식을 따르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인증 방법으로는 암호나 전자서명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인이 그것을 직접 인식할 수는 없다. 정보사회의 진전과 함께 컴퓨터가 일반 행정, 상업 활동에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그러한 활동의 결과가 컴퓨터를 통해 기록됨으로써, 전자적 기록물이 문서성을 가질 수 있는 가하는 문제는 정보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전자적 기록물에 대한 문서성의 인정 또는 그것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것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전자문서의 개념

전자적 기록물의 문서성

전자적 기록물의 문서성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 (1) 전자적 기록물을 문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2) 전자적 기록물을 문서로 인정한다면 정보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문서로 볼 것인가? 기록된 매체를 문서로 볼 것인가?
- (3) 그러한 기록을 가시적으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출력한 Hard Copy 또는 Soft Copy도 전자문서에 포함할 것인가?

오늘날 공공 기관·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는 복잡하고 대량일 뿐만 아니라 이를 장기간 보존하는데 막대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검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어 모든 장부·서책을 비록하여 문서들이 전자적 기록물의 형태로 기록·처리·보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전자적 기록물이 비록 전통적인 문서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것에 문서성

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정보사회의 발달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먼저 민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 및 결재 등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자적 기록물을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형법상의 공문서 또는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허위 공문서 등의 작성죄,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비밀침해죄에 의거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내장된 화일이나 데이터를 위조·변조·허위 작성 또는 부정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중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적 기록에도 법적으로 문서성을 인정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적 기록의 특성상 문서성 인정에 대한 찬·반 양론이 각계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첫째, 전자적 기록물인 자기 디스크·테이프 등도 컴퓨터 특유의 기계어인 부호 등에 의하여 표현되어 있다. 둘째, 부호 등 그 자체는 가시성·가독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사람의 사상·의사·개념 등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를 컴퓨터 조직을 통하여 출력하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문서로 재현할 수 있다. 셋째, 이와 같은 재현된 문서와 전자적 기록물 또는 프로그램은 일체불가분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적 기록물은 당연히 문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측의 주장은 첫째, 자기 디스크 등에 입력되어 있는 자리는 문자·부호 등의 어떤 형체로 물체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이너스(-)·플러스(+)의 자성체에 불과하다. 둘째, 이러한 자성체는 순간적으로 흔적없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이것까지 문자나 기호로 본다면 문서의 개념에 크게 혼란을 가져온다. 셋째, 컴퓨터 조직에 의하여 출력된 자료는 당연히 문서이지만 그 전단계인 전자적 기록자체는 가시적·가독적일 수 없으므로 이것까지

문서로 인정한다는 것은 논리의 지나친 비약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전자적 기록물에 대한 문서성 인정의 입법례는 곳곳에서 산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의 입법례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전자적 기록인 ‘등록 파일’을 문서로 인정하였으며, 사무관리규정에서 문서의 종류에 디스크를 추가하였고, 지적법, 관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등에서도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등록된 파일의 문서성을 인정하였다. 더욱이 1991년에 제정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문서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전자적 기록의 문서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 및 제정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개정형법(1987. 6) 제157조에서는 “… 권리 · 의무에 관한 공정증서의 원본으로 있는 전자적 기록에 부실의 기록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8,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동제162조의 2에서는 “사무처리에 사용으로 제공되는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부정으로 작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전자적 기록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적 기록을 기록매체상에 존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전자적 기록을 기존의 문서와 같은 취급을 하는 입법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가기밀 ·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개별 · 파악 · 노출하거나 권한 있는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규를 제정하였다. 독일의 경우 1987년의 개정형법에서 ‘법률상의 거래에 있어서 사람을 기만하기 위하여 증거로 되어 있는 데이터(전자적 기록물)을 허위 또는 변조된 문서로 작성 · 축적하거나 이를 행사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전자적 기록물의 문서성을 인정하였다. 영국의 경우 컴퓨터 부정 사용 처벌 등에 관한 법률(Computer Misuse Act 1990)을 제정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파괴, 무단 접근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적 기록물에 대해 문서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러한 기록이 ‘문서’와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전자적 기록물을 ‘전자문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적 기록물이란 광의로 해석하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식으로 기록된 모든 것을 의미하나 컴퓨터가 업무처리의 핵심도구로 자리잡은 정보사회에서는 특히 그 기록 방식이 컴퓨터 조직을 통하여 처리되고 저장된 기록만을 ‘전자문서’의 범주에 넣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문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문서와는 작성 방법, 존재 형태, 인지 방법 등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컴퓨터 조직을 통해서 작성 · 처리되며, 컴퓨터 조직의 내부 기억장치 또는 외부의 보조 기억장치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기억 장치 속에 존재하는 양식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언어 또는 문자가 아닌 컴퓨터 조직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서 기호나 부호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그 내용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퓨터 조직을 이용해야만 사람이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개념의 종이 문서라면 일정한 사상이나 관념이 기록된 종이 그 자체가 문서라고 할 수 있지만 전자문서 개념에서는 특정의 부호가 배열된 기억장치를 문서로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기억장치 또는 기억매체만으로는 그 내용은 물론 사상이나 관념의 존재조차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EDI에서는 수많은 문서가 당사자간에 교환되지만 기억장치를 전달 · 교환하는 것은 아니라 기억매체에 저장된 파일을 교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무관리규정에서는 공문서의 개념에 디스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규정 제30조에서는 ‘…의하여 문서를 수록한 마이크로 필름 또는 광디스크는 당해 문서가 폐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존중

인 문서로 본다'고 규정하여 기록매체에 문서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특별법에서는 ‘…화일’을 문서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개인정보화일’이라고 정의하여 파일과 매체를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 전자문서의 내용은 기억장치 속에 파일의 형태로 구분되어 기록되며, 하나의 기억장치 속에는 대체로 수많은 파일이 수록되어 있다. 더욱이 그 파일은 개별적으로 출력되거나 전송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조직의 기억장치나 기억매체가 아니라 ‘컴퓨터 조직에 의해 작성·처리 또는 교환되어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수록된 파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파일은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므로 특정 용도를 위해 사람이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조직을 통해 모니터 또는 종이 상에 출력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러한 출력물도 전자문서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기억장치에 수록된 파일과 출력물은 근본적으로 그 양상이 다른 형태의 기록이며 따라서 출력시 그 내용이 변경·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그렇지만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고의적이 아닌 한 그 내용의 변경·유실 우려는 별로 없으며 인간의 인식을 위해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 등의 형태로 출력될 필요가 있으므로 정당한 과정을 통해 파일이 출력된 경우 전자문서와 내용상 동일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처리정보를 원본으로 그 출력물은 사본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컴퓨터에 의한 문서활동을 근본취지에 쫓아 염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력물 자체를 전자문서로 볼 수는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자문서는 ‘컴퓨터 조직의 기억장치 속에 저장된 파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상의 전자문서

우리나라의 무역자동화법에서는 ‘전자문서’를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되거나 출력된 전자 서명을 포함한 전자자료’라고 정의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화일과 그 출력물을 모두 전자문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이 법의 적용범위는 ‘EDI 방식으로 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업무’에만 적용된다. 동법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컴퓨터간에 전송되거나 출력될 것.
- ② 전자서명이 포함될 것.
- ③ 전자자료일 것.

위 요건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컴퓨터간에 전송된 전자자료이거나 그 전자자료가 가시적인 형태로 종이 등에 출력된 출력물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전송된 전자자료’란 컴퓨터조직에 의하여 작성되고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되어 컴퓨터 조직의 기억장치 속에 저장된 전자자료를 말하므로 컴퓨터 조직만이 인식할 수 있는 기계어 등으로 표현된 파일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출력된 전자자료’라 함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형태로 출력된 것을 의미하는데 모니터상의 영상출력이나 종이 등의 hard copy 방식도 모두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이것은 컴퓨터 기억장치 속의 전자자료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이지만 작성자(또는 송·수신자)의 의사표시 내용측면에서 는 동일한 의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업무처리의 편의와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실무상의 필요성에 의해 전자문서의 개념 속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진보된 입법례라 할 것이다.

하지만 컴퓨터 조직 속에 저장된 파일과 종이 등에 출력된 hard copy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고, 출력시 변경·훼손·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출력물

과 파일의 내용의 동일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둘 중 어느 것을 원본으로 볼 것이나 하는 문제가 있으며 파일과 출력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건이 ‘전자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요건이다. 전자 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전자서명 방식이 개발되었는 바 이는 작성자 또는 발신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떠한 전자적인 방법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무역자동화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무역업무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바 무역업무 처리의 전산화 및 무역관련 문서의 표준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까지는 대부분의 현실적인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동법에서 말하는 전자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현행 무역자동화법은 매우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 자동화법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의 개념은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EDI 문서

EDI 문서라 함은 간단하게 ‘EDI 방식으로 생성된 전자문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EDI 문서도 전자문서임은 분명하나 그 생성과정에서 EDI 방식이 도입되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EDI 문서와 전자문서는 둘 다 컴퓨터 조직을 통하여 작성되고 처리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EDI 문서는 거래 당사자간에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EDI 방식으로 문서가 교환되거나 교환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이 중시된다. 그런데 일반 종이 문서와 달리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문서가 교환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문서 작성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구조화하며 어떠한 순서로 배열할 것인가 하는 작성양식 표준화의 문제가 선결과제이다. 또한 원활한 문서교

환을 위해서는 통신망의 접속 및 송·수신에 관한 통신방식의 표준화도 해결되어야 한다. 국제간에 무역거래가 EDI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역 관련 모든 문서가 표준화되어야 하며 상이한 통신표준을 채택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간에도 국제적인 공통의 표준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컴퓨터 조직을 통하여 정보가 처리되고 VAN 등 공중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가 교환되었다 하더라도 표준화되지 않은 채 교환된 문서는 전자문서의 범주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EDI 문서라고는 할 수 없다. 물론 개별 기업 또는 기업 그룹 내에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형태의 전자 교환 메시지도 전자문서에만 포함될 뿐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EDI 문서는 전자문서의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무역거래를 포함한 일반 상거래 뿐만 아니라 행정·상업·운송 등의 각부문에서도 EDI를 통한 정보교환이 업무의 능률화를 위해서 추진·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자문서와 EDI 문서를 개념상 구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전자문서에 관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고자 할 경우 그 실상은 대체로 무역관련 EDI 문서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사회가 성숙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민법이나 형법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한 개념정의나 그 철별에 관한 법규가 정비되어있지 않으며 개개의 특별법에서 그 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서 전자문서에 관한 개념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성숙도에 걸맞는 통일적인 개념정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으며 그러한 통일적인 개념하에서 전자문서에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활용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여 국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